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28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김성원 · 이현승 · 김은혜
김선교 · 송석준 · 고동진
유용원 · 배현진 · 김종양
김용태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의 산업 · 관광 · 주거 · 공공시설

등의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를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시·도 또는 시·군에 양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u> <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7조의3(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u>

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

<신 설>

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는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
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
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
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
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
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
사업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
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를 군부대가 현

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시·도 또는 시·군에 양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